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6월 4일

CUOMO 주지사,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 법안 제출

성평등을 확립하고 뉴욕주를 여성 권리의 리더로 회복하는 획기적 법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여성평등동맹의 회원들과 함께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을 종식하고 뉴욕주를 여성 권리의 리더로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 의해 제정되면 본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모든 직장에서 급여 형평성을 달성하고, 성희롱을 근절시키며, 임신 차별을 예방하고, 인신매매 법률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가족 상태 차별을 종식시키며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1848년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미국에서는 뉴욕주 Seneca Falls에서 개최된 최초의 여성권리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뉴욕주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을 전진시킨 중요한 사회적, 법적 운동의 선두에 있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여성 권리의 진보적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뒤쳐졌습니다. 오늘 본인이 제출한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우리 커뮤니티들에서 성 불평등을 해결하고 뉴욕주를 여성 권리의 리더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급여 형평성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급여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별 이외의 기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급여 결정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체제를 최종적으로 무너트릴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직원이 보복당하지 않고 임금 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권리를 보호하고 급여 형평성 차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여성이 남성 소득의 84%를 벌며, 평생 동안 남성보다 500,000 달러를 적게 벌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일자리는 남성을 압도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보다 급여가 크게 작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풀타임 근무 여성이 일년에 평균 \$42,113를 받는데 남성은 일년에 평균 \$50,388를 받습니다. 2013년에 이것은 용납될 수 없고 부조리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을 근절시킬 것입니다: 이 새 법률은 직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을 금지시킬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보호됩니다. 현재, 뉴욕주 법률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직장에서의 성희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여성은 NYS 인권과에 제기된 모든 성희롱 진정의 75% 그리고 평등취업기회위원회에 제기된 모든 성희롱 진정의 83%를 차지하였습니다. 뉴욕주 고용주들의 60% 이상이 4명 미만의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 차별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에 근거한 고용 또는 신용 차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부분이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하는 사건에서 온전히 보상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원고가 고용 차별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제기의 대가가 커집니다. 뉴욕주에 제기되는 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 사건의 약 77%가 여성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족 상태 차별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무 또는 승진을 고용주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족 상태 차별을 금지하는 5번째 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률은 주택 및 신용 분야에서 “가족 상태”에 근거한 차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태에 근거한 차별은 아이가 있는 여성, 특히 빈곤하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의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해 주택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새 법률은 집주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현재 주 법률에 의하면 가정 폭력 피해자는 주거지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거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85%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 피해자 차별은 거의 언제나 여성 차별입니다.

소득원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합법적 소득원에 근거하여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므로 가족이 안전하고 품위있는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제8조 바우처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 선택 바우처 수혜자의 76%가 여성이기 때문에 제8조 수혜자 또는 기타 공공 주택 지원 수혜자에게 임대하기를 거부하는 집주인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보호명령 법률 강화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 출두해야 하기 보다는 전자 수단을 통해 임시 보호명령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필요시 보호명령이 번역되게 하여 그녀의 학대자를 상대로 한 보호명령을 갖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소될 수 없도록 합니다. 현재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학대자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확보하는 데 너무 많은 장애에 직면합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장애들 중 많은 것을 제거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인신매매 법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기존 인신매매 법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성 인신매매 기소에서 “강제”를 입증할 요건을

부분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춘 기소에서 피고 자신이 성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 사실 인정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기소와 집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지하 인신매매 산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임신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직원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특정 보호 조치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근로 임신 여성을 위한 보호는 혼동스럽고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임신은 의학적 상태를 야기하여 직장에서 합리적인 편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태아 생존 이전에 또는 여성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낙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대법원 법률을 성문화할 것입니다. 이 법률은 뉴욕주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하는 뉴욕주 법률은 시대에 뒤졌으며 *Roe 대 Wade*에서 명기된 보호와 현재의 주 관행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여성평등 활동가이자 미국 고용 차별 사건인 *Ledbetter 대 Goodyear Tire & Rubber Co.*,에서의 원고였던 Lily Ledbet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등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력을 법률을 포함하는 Cuomo 지사님의 10 요점 여성평등 어젠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 통과는 다른 주들과 연방 정부가 근로 여성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의 리드를 따르도록 고취할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Roe 대 Wade* 대법원 소송에서 Jane Roe를 대변한 변호사인 Sara Wedding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oe 대 Wade*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논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 생식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시킬 Cuomo 지사님의 법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지사님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보호가 여성 평등을 달성하고 변화를 유발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정합니다.”

NARAL의 집행이사인 Andrea Mil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100만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맹과 주지사실의 많은 노고의 결실이며 우리는 뉴욕주가 생식 선택권을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내 남녀의 삶을 개선하는 절정에 있어서 더 이상 흥분될 수 없습니다.”

뉴욕주 Family Planning Advocates의 집행이사인 Tracey Broo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뉴욕주는 중요한 사회적 운동의 뒤에 있었습니다. 여성 평등에 대한 주지사님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뉴욕주는 이러한 이슈의 선두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인신매매 및 직장차별을 해결하고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여성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집행이사이자 뉴욕주 여성평등동맹 운영위원회 위원인 Donna Lieber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입법 회기가 끝나감에 따라 우리 주의 1000만 여성은 흥분되며 여성 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이 투표되고 통과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여성 평등을 위한 리더가 될 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가 급여 형평성,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임신 차별을 방지하고, 인신매매와 가정폭력의 생존자를 위한 보호를 증진하고, 여성 자신의 개인적, 사적 건강 관리 결정을 할 권리를 보호에 ‘예’라고 말할 때입니다. 뉴욕주 여성의 눈은 의회에 가 있으며, 이 역사적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이 우리 주 여성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뉴욕주 Business and Labor Coalition의 집행이사이자 광역뉴욕시 상업회의소 회장인 Cynthia DiBartol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에 기반한 불평등은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하면 나쁜 경제학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주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 노동 및 뉴욕주가 번영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하여 여성을 위해 직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성평등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Asian Women in Business의 총재인 Bonnie Wo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님이 여성 평등을 의회 회기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사님은 뉴욕주를 미국을 위한 진보적 핫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100 Hispanic Women, Inc.,의 총재인 Milagros Baez O’Too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10 요점 여성평등법을 발표한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사님은 진보적 개혁의 통과 성공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리더로서 뉴욕주의 역할을 공고히 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Asian American Federation의 집행이사인 Cao K. 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 평등을 이번 의회 회기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사님의 10 요점 어젠다는 명료하고, 매력적이며,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평등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뉴욕주를 다시 한 번 미국의 선두에 놓은 지사님의 비전과 리더십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Center for the Women of NY의 회장인 Ann Jaw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 평등을 이번 의회 회기의 우선 순위로 삼은 지사님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사님은 뉴욕주를 미국을 위한 진보주의의 핫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브로드웨이 스타이자 여배우인 Patti LuP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 평등 어젠다 만세! 뉴욕주에서의 여성 권리 차별을 줄이려는 귀하의 시도를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Stewarts Shop의 CEO인 Gary Dak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족 및 직원 소유 기업으로서 우리는 장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착취는 장기적 강점과 안정성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합니다. 우리 인력은 약 3분의 2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강할수록 회사가 전체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Roosevelt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자 *Woman of Valor: Margaret Sanger and the Birth Control Movement in America*의 저자인 Ellen Ches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Margaret Sanger가 1916년에 Brooklyn에서 미국 최초의 산아제한 클리닉을 열어 감옥에 감으로써 여성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래 근 1세기 동안 생식 건강 및 권리의 리더였습니다. Cuomo 지사님의 여성평등 어젠다는 여성, 가족 및 우리 사회를 위해 진보를 만든 우리 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그 강도의 또 하나의 전환점을 약속합니다.”

Herbert and Doris Wechsler Clinical Professor of Law의 법학 교수이자 Center for Gender & Sexuality Law의 공동원장 겸 Columbia Law School의 Sexuality and Gender Law Clinic의 원장인 Suzanne B. Gold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보호는 여성평등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을 위협에 빠트리기 위한 전국적 입법 활동의 맹공격 속에서 뉴욕주의 여성평등 어젠다 리더십은 이제 특별히 중요합니다.”

Barnard College Athena Center for Leadership Studies의 법학박사이자 미국 대법원의 *Thornburgh* 대 *ACOG* 및 *Planned Parenthood* 대 *Casey*에서 논쟁한 Kathryn Ko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 *Roe* 대 *Wade*를 재확인해 달라고 두 번 요청한 적이 있는 저는 그 기념비적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더라도 알맹이를 빼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전국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무엇을 하든 상관 없이 *Roe*에 맞추어 여성이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뉴욕주의 낙태 법률을 업데이트하려는 Cuomo 지사님의 제안은 이보다 더 시의적절하거나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총재 겸 CEO인 Nancy Northu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 무자비하게 보이는 공격이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주민들을 위해 여성의 생식 건강과 권리를 위한 40년의 헌법적 보호가 보존되게 할 역사적 기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건강, 평등, 자율 및 헌법상 권리를 이 주에서 보호하기 위한 Cuomo 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